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레드캡투어 및 자회사 레드캡미스(이하 '회사'라고 한다)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윤리적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내부 규율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사의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본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관련한 회사의 모든 사업 활동과 임직원(임원,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인턴 등 포함)들의 모든 업무에 적용된다. 단, 관련 법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란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정거래 관련 법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경쟁 촉진 및 공정거래질서 유지 목적의 제반 법규를 말한다.
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자율준수 프로그램' 또는 'CP'라 한다)"이란 임직원이 자율준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회사가 마련한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법규 준수에 필요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포함한다.
4. "자율준수관리자"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5. "자율준수 전담조직"이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실무 운영을 전담하며,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고 필요 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자료·정보를 수집·점검하는 조직을 말한다.
6. "자율준수협의회"란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모든 기구 및 회의체를 말한다.
7. "위반행위"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또는 자율준수 운영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위험성 평가"란 부서별 업무와 관련한 법규 위반 가능성을 사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 "사전업무협의"란 업무 수행 전 법 위반 가능성 검토를 위해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 전담조직과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10. "자율준수편람"이란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이해와 준수 필요성 제고를 목적으로 작성·배포하는 문서로, 회사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준, 주요 법령, 준수 지침 등을 수록한 자료를 말한다.

제 2 장 자율준수 조직

제 4 조 (대표이사의 역할)

1. 대표이사는 자율준수가 회사의 중요한 경영 가치임을 보장한다.
2. 대표이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충분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3. 대표이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과 지속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한다.
4. 대표이사는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주요 경영정책과 사업목표에 반영되도록 한다.

제 5 조 (대표이사의 권한)

1. 대표이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2. 대표이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3. 대표이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제 6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1.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 1) 자율준수 관련 업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위와 직책을 가진 자
 -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준법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3. 자율준수관리자는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4.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사실과 역할을 사내 게시, 이메일 등 적절한 방법으로 모든 임직원에게 알린다.

5.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과 의무)

1. 자율준수관리자는 대표이사 직속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자율준수 실태 점검 및 조사권
 -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시정요구권
 - 3)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권
 - 4)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대한 직접 보고권 및 개선 건의권
 - 5) 기타 자율준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한
 - 6) 정기 감사를 기획·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시정 조치를 요구할 권한
2. 자율준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독립적·효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영업, 구매 등 자율준수 관련 업무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위험이 높은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제 8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1.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자율준수 계획 수립 및 시행
 - 2)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
 - 3) 반기 1 회 이상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대한 운영현황 및 실적 보고
 - 4) 위험성 평가 및 사전업무협의 운영·관리
 - 5) 위반행위 점검 및 시정조치
 - 6) 임직원 교육 기획·실시
 - 7) 운영기준과 자율준수편람의 제·개정 및 배포
 - 8) 자율준수협의회 소집·운영
 - 9) 자율준수 관련 기록 유지 및 관리
 - 10) 정기 감사를 주관하고, 감사 결과 및 후속 조치 사항을 대표이사 및 최고경영진에게 보고
 - 1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전반에 대한 효과성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자율준수 운영계획에 반영

2. 자율준수관리자는 필요 시 본 규정에 따른 직무의 일부를 전담조직 또는 유관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 9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

1.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자율준수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관련 업무를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준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자율준수 관련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제 10 조 (자율준수협의회)

1. 회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자율준수협의회를 둔다. 자율준수협의회는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회의체 성격에 따라 ESG Weekly, ESG Monthly, ESG CEO 칼럼 등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그 명칭과 형식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운영하는 방식에 따른다.
2. 협의회 위원장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맡으며, 위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련 업무의 관련성, 직위, 역할 등을 고려하여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한 자로 구성한다.
3. 자율준수협의회의 정기 운영 방식은 회의체의 성격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구체적 일정과 빈도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정한다.
4. 협의회의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준수 기본방침과 운영계획의 심의·자문
 -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동향, 위반사례, 사전업무협의 주요 사항과 대표이사·이사회 보고 대상 사안의 공유·개선 방안 검토
 - 3) 자율준수 관련 중요 사항 및 위반행위 예방·시정조치에 관한 심의
 - 4)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대표이사는 필요 시 자율준수협의회에 참석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 동향과 회사의 자율준수 활동 현황을 보고받고, 임직원들에게 자율준수의 중요성을 직접 천명하며 그 의지를 적극적으로 강조·강화하고 확산시킬 수 있다.

제 11 조 (자율준수 전담조직)

1. 자율준수 전담조직은 정도경영팀으로 한다. 단,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좌한다.
3. 자율준수 전담조직은 필요 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직원에 대하여 각 현업부서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와 관련된 진술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자율준수 전담조직의 요청을 받은 임직원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2 조 (임직원의 의무)

1.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운영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중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업무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운영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본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4. 모든 임직원은 자율준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효과성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모든 임직원은 자율준수와 관련된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 3 장 프로그램 운영**제 13 조 (자율준수 의지의 천명)**

1. 대표이사는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 및 임직원들의 자율준수 실천을 위하여 자율준수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의 자율준수 의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작성되어 사내 게시, 이메일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직원에게 전달한다.
3. 대표이사의 자율준수 의지는 대외적으로도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4. 대표이사는 자율준수 의지를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지시하며, 그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 14 조 (자율준수편람)

1.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업무 특성과 고위험분야를 반영한 자율준수편람을 작성·배포 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편람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개정사항, 운영기준 변경, 주요 위반사례 등을 반영하여 필요 시 개정하고, 그 내용을 임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3. 자율준수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전산망 등에 게시하며, 임직원이 이를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병행할 수 있다.

제 15 조 (교육)

1. 회사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와 자율준수 프로그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 교육을 실시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고위험부서 또는 직무 특성상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별도의 심화 교육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3. 교육은 임직원의 직급·직무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이를 통한 소속 직원에 대한 전파 교육 방식으로 병행할 수 있다.
4.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진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하는 정기 교육에 참여하여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다.
5. 교육의 효과성은 참석률, 이해도, 만족도, VOC 등으로 평가하고, 필요 시 개선조치를 시행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회사는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6 조 (내부신고 시스템)

1.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내부신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2. 내부신고는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회사는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인사 규정에 따른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4.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신고 사항에 대해 조사팀을 구성하거나 관련 부서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5. 내부신고 운영현황은 반기 1 회 이상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한다. 단, 중대한 위반행위나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이사회 및 자율준수협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다.
6. 내부신고는 위험성 평가 및 사전업무협의제도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며, 임직원은 위반 사실이나 의심 사례를 신속히 보고하고, 회사는 이를 점검·시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제 4 장 위험성 평가 및 사전업무협의

제 17 조 (위험성 평가)

1.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사업 활동 전반에 걸쳐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을 식별·평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2. 위험성 평가는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되, 부서·업무의 성격, 법 위반 가능성, 과거 위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하며, 필요 시 수시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고위험 영역을 관리·감독하고, 필요 시 심화 교육·점검 등 보완조치를 시행한다.
4. 자율준수관리자는 필요 시 위험도 수준(상·중·하 등)에 따라 평가 결과를 구분·관리할 수 있다.
5. 위험성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 중대한 리스크가 발견된 경우 이사회 및 자율준수협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 18 조 (사전업무협의제도)

1.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중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법적 리스크가 우려되는 경우, 사전에 자율준수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사전업무협의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보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사전업무협의 결과는 반드시 기록·관리하여, 향후 준법경영 활동 및 위험성 평가에 반영한다.
4. 자율준수협의회는 중요하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전업무협의 사항을 공유·검토하고,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

제 5 장 효과성 평가 및 사후관리

제 19 조 (효과성 평가)

1.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황 및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2. 효과성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1)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 및 인식 수준
 - 2) 연간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계획 대비 실제 시행 성과
 - 3) CP 관련 교육 성과
 - 4) 법 위반 행위의 발생 빈도 등 회사에 미친 영향
 - 5) 자율준수 전담조직 소관 예산 및 인력의 적정성
3.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평가와 별개로 효과성 평가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CP등급평가를 신청하여 평가 등급을 취득하거나 외부 전문가 집단에 효과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4. 자율준수관리자는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며, 필요 시 이사회 및 자율준수협의회에도 공유할 수 있다.
5. 효과성 평가 결과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개선 및 차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19 조의 2 (정기 감사)

1.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한다.
2. 정기 감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주관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정기 감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 서면 검토: 계약, 결재 문서, 교육 이수 현황, 위험성 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 검토
 - 2) 인터뷰 및 현장 점검: 관련 부서 임직원과의 인터뷰, 현장 확인 등
 - 3) 표본 점검: 특정 부서 또는 거래 유형을 선정하여 심층 검토
4. 자율준수관리자는 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 내역을 대표이사 및 최고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감사 결과 중 중요한 사항은 자율준수협의회에 공유하고, 협의회는 이에 대한 피드백 및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회사는 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가 적시에 이행되도록 후속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율준수관리자는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대표이사 및 최고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9 조의 3 (우수 임직원 및 부서 포상)

1. 회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임직원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임직원 또는 우수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은 자율준수관리자가 교육 참여도, 전파 활동 이행도, 자율준수활동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포상 결과 및 운영 현황은 자율준수협의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해당 실적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 19 조의 4 (우수 협력사 포상)

1.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과 협력사 상생 강화를 위하여 필요 시 우수 협력사를 선정 및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협력사의 준법윤리경영 실천, 거래 투명성, 상생 활동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후보를 선정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포상 결과 및 운영 내역은 필요 시 자율준수협의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해당 실적은 자율준수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4. 포상 관련 세부 기준 및 절차는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 20 조 (사후관리)

1. 자율준수관리자는 효과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전업무협의, 내부신고 등을 통해 확인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시정 및 보완 조치를 추진한다.
2. 회사는 시정보완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즉시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21 조 (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제재)

1.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전보 등 인사제재를 인사부서에 요청하고, 필요 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중대성, 고의·과실 여부,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재의 수준을 결정하며, 구체적 제재 유형은 인사 규정 및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단, 임직원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위반 방지 노력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경감 사유로 참작을 징계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22조 (기타사항)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회사의 다른 규정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공정거래 관련 사항에 한하여 회사의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사적 준법의 기본 사항은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따르며,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소비자중심경영(CCM) 운영규정」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규정의 효과적인 시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세부 기준 또는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26년 02월 27일부터 제정 시행한다.